

附錄 I

中共의 經濟特區 現況 및 展望

孫 仁 燮

- | | |
|---------------------|--|
| I. 序 | 2.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 |
| II. 經濟特區의 設置背景 및 經過 | 3. 廣東省經濟特區條例 |
| III. 經濟特區 現況 및 投資環境 | 4. 經濟特區 및 沿海 14 個 港灣都市의
企業所得稅·工商統一稅의 減免에
關한 暫定規定 |
| IV. 展 望 | |
| 〈附 錄〉 | |
| 1.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 |

I. 序

中共黨 제 11 期 3 中全會에서 ‘對外開放政策과 經濟體制改革’을 決定한 以來 表面화된 中共의 現代化政策은 黨權을 장악한 鄧小平이 ‘對外開放’, ‘經濟活成化’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1980 年代 初, 廣東·福建 兩省에서 對外經濟新體制를 實施한다고 宣布하고,¹⁾ 外貨·先進技術의 導入 및 輸出 擴大를 통한 外貨收入增大를 促進하기 위해 廣東省의 深圳·珠海·汕頭와 福建省의 廈門에 ‘經濟特區’를 設立하기로 하였다.

中共當局의 聲明에 의하면 ‘經濟特區’란 特殊한 經濟政策과 管理方法을 가지고 關稅減免등 各種 優待條件을 부여하여 外商(外國商社와 企業, 華僑商社 및 香港·마카오 商人 포함)의 特別區에서의 投資 혹은 大陸國營

1) 1979.7 中共中央文件 50 號에서 廣東, 福建兩省에 1980 년부터 新經濟體制的 實行을 비준 (「文匯報」 1980.4.21)·下達하였다.

企業과의 合作을 장려하고 加工輸出·土地·建物 등 不動產·觀光事業 또는 기타 經濟事業을 경영하는 일을 장려하여 ‘社會主義國家內에 國家資本主義方式’을 채택한 지역을 말한다. 經濟特區의 立地的 特徵은 홍콩인 접지역과 대만근처에 위치한 沿岸地域으로 국내보다 해외와의 교통망연계가 원활하다는 점과 華僑出身地域으로 華僑資本 유치에도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特區設置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를 資本主義的 物質文明에 의한 정신오염방지와 特區政策이 失敗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廈門特區는 장차 臺灣과의 統一을 의중에 두고 段階的인 交流擴大를 꾀하려는 政治的인 의도로 보인다.

한편 中共의 經濟特區가 여타 開發途上國家의 自由貿易區 혹은 輸出加工區와 다른 점은 特區內 住民居住의 허용과 特區內에서 生産된 제품의 自體消費를 허용하는 점이다.

中共이 經濟特區를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알려진 바와 같이 一部 華僑를 除外한 美·日 등 西方先進國의 投資家들은 特區에 對하여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의 體制改革을 위한 實驗地域으로서 그 발전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차 동남아 및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의 일환인 經濟特區開發方式을 모방하여 1984年 1月 제 7기 3차 最高人民會議에서 “未修交 資本主義國家들과도 對外經濟協力을 強化한다”는 方針을 채택하였으며 同年 9月 外國과의 經濟·技術交流 및 合作投資유치를 目的으로 하는 ‘合營法’을 채택하는 등 일련의 政策變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II. 經濟特區의 設置背景 및 經過

1. 設置背景

1976年 9月 毛澤東死後, 華·鄧體制가 確立되면서 계만 社會主義經濟建設에 관한 長期的인 과제, 即 '4個現代化'의 實現을 위한 資本과 技術導入의 必要性이 強調되면서, 그동안 對外經濟政策의 原則이었던 '自力更生' 原則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게 되었다. 1977年 4月 華國鋒은 "經濟政策의 基本方針으로서 自力更生原則을 關切한다는 것은 外國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外國의 좋은 經驗을 배우고 先進技術과 設備를 導入하는 것이며 貿易은 現實에 對한 科學的인 관찰과 부단한 實踐經驗을 통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強調하였는가 하면, 特히 同年 8月 12日 개최된 中共黨 第11次全大會에서는 "自力更生은 自給自足を 意味하는 것이 아니며 外國의 科學技術과 文化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4個現代化를 實現하는 社會主義強國을 建設하기 위해서는 輸出資源의 開發과 輸出品 增産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申明하여 自力更生の 原則을 再解釋하기에 이르러 1977年以來 中共은 事實上 그간의 '自力更生' 原則을 포기하고 積極적인 對外開放經濟政策을 導入하였다.

특히 1979年 4月의 中央工作會議에서 당면한 經濟政策의 조정과 經濟計劃의 修正을 단행함과 同時에 現在의 不足한 외환사정 아래서는 外資를 利用하는 것 외에 다른 方法이 없음을 결론짓고 華國鋒에 의해 外國資本의 利用이 움직일 수 없는 基本政策임을 公式宣言하게 됨으로써 外資導入 및 利用에 관한 基本政策이 확정되었다. 또한 同年 7月 外國人의 中共內 直接投資를 허용하는 '中外合資經營法'을 制定·公布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法的 體制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1980年 9月 제5기 全人代 제3차 會議에서 合資企業에 관한 企業登錄法, 勞動法, 法人稅法, 所得稅法 등을 채택하여 外國企業의 投資를 위한 本格的인 法的 補完을 추진하였다.

요컨대, 中共의 經濟特區 設立背景은 鄧小平이 이끄는 現實用主義政權이 추진하고 있는 ‘4個 現代化’ 計劃과 直接 관련되어 있으며, 西方諸國의 先進技術과 資本 및 資本主義市場 메카니즘에 의한 실험지역으로活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主要目的은 特區內 企業이 生産하는 제품은 原則的으로 輸出토록 義務化함으로써 海外市場의 開拓과 外貨獲得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設置經過

中共의 經濟特區 設置構想은 1978年부터 배태되어 深圳지구는 1978年 5月부터 輸出加工區 및 觀光區建設計劃을 놓고 中央의 關係者들이 外國 企業들과 여러가지의 外資導入協商을 始作하였다. 그 후, 1979年 2月 中共國務院은 원래 廣東省 寶安縣 深圳鎮이던 地域을 廣東省政府 直屬의 省 直轄市로 승격시킨 후, 寶安縣全地域이 深圳市로 편입되어 深圳市는 면적 2,020km², 人口 約 3萬名의 新興都市로 되었다. 이에 앞서 1979年 1月 30日 國務院은 深圳市 西南端에 위치한 蛇口地區를 工業區로 設定하고 中共의 香港주재 국영기관인 「招商局」이²⁾ 이 工業區를 開發·運營토록 하였다.

또한 同年 7月 15日 中共中央은 제 50號 文件을 下達하여 廣東·福建省에 1980年부터 ‘特殊한 政策’과 ‘彈力的인 措置’를 적용하는 새로운 經濟體制를 實施토록 한 指示와, 同年 9月 當時 中共副總理 谷牧가 訪日時, 中共은 廣東省의 深圳·珠海 2個 都市에 經濟特區를 設置할 것이라는 計劃을 公開함으로써 表面화된 以來, 同年 12月 16日 개최된 廣東省 第5期 人民代表會議에서 ‘廣東省 經濟特區 設置에 관한 施行條例草案’을 심의하고, 同月 29日 당시 福建省 省長 張遺가 福建省의 琅岐·杏林의 두 地域에 대한 經濟特區設置計劃을 밝힘으로써 中共의 經濟特區 設置問題는 具體化되기 始作하였다.³⁾

2) 香港 招商局은 中共交通部 遠洋運輸總公司의 全權代理機構로서 中共交通部가 총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官民營會社임.

3) *The China Business Review*, 1980, pp. 10~11.

그 후 1980年 4月 廣東省 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에서 '廣東省 經濟特區 條例'를 承認·公布함과 아울러 同年 8月 26日 개최된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15次 會議에서 國務院이 提出한 '廣東省 經濟特區條例'를 비준함으로써 立法化되어 中共의 經濟特區는 正식으로 발족되었다.⁴⁾

4) 中共의 경제특구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日 字	中央의 重要措置	日 字	地方의 措置
1979년 1월 30일	中共國務院이 蛇口工業區 설치인준, 香港의 招商局이 管理	1979년 1월	福建省華福公司(福建省投資企業公司)설립.
7월 15일	中共中央 第50號 文件에서 廣東·福建兩省에 대하여 대외개방의 확대실시를 지시	2월 ~3월	廣東省, 深圳·珠海 2개市 설치
9월	谷牧은 訪日中 동경에서 中共이 深圳, 珠海에 經濟特區를 설치할 계획임을 발표	8월	廣東省, 汕頭에 經濟特區를 설치할 계획임을 발표
		10월	香港 妙麗그룹이 福建省 琅岐島개발을 계획하고 동開發計劃設計를 완성
		11월	福建省에 「琅岐島工業特區 管理委員會」설치
		12월 16일	廣東省 第5屆人大 第二次會議에서 深圳·珠海 및 汕頭의 3個 經濟特區설치를 결의
		12월 29일	福建省, 琅岐 및 杏林의 2個 經濟特區를 설치할 계획임을 선포
1980년 4월 27~ 28일	中共黨主席葉劍英, 深圳·珠海視察	1980년 4월 14일 ~16일	廣東省人大常委會, 「廣東省經濟特區條例」비준
		4월 21일	福建省副省長溫附山, 廈門·晉江·蒲田 등에 특구를 개발할 예정임을 발표.
		4월 21일	經濟特區 正시설치
5월	中共國務院, 福建省 湖理地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琅岐와 杏林 2個特區計劃을 방치할 것 결정	5월	福建省 여타 經濟特區計劃을 방치하고 廈門島의 湖里地區를 우선 개발할 것 발표
8월 26일	中共 第5屆人代會 第15次會議, 「中華人民共和國廣		

Ⅲ. 經濟特區 現況 및 投資環境

1. 經濟特區 現況

經濟特區는 一般적으로 中共側이 獨資로 혹은 外資와 合作하여 '인프라' 部門을 개발정비하여, 거기에 外資가 위탁가공, 合作, 合併, 獨資 등의 形式으로 進出하고 있으며 合併, 合作 등의 경우 外資의 상대는 特區內의 既存企業에 한하지 않고, 中共內 各省의 工場企業과 協同하여 出資하는 경우도 많다.

特區에의 投資는 대체로 홍콩으로부터의 投資가⁵⁾ 많으며 그 중에서도

	東省經濟特區條例」를 정식 통과		
1980년 12월	中共國務院, 正式으로 廈門經濟特區 설치를 인준	1980년	
1981년 6월	中共國務院, 北京에서 經濟特區會議 개최	1981년 11월	廣東省海南島의 급속한 개발을 결정
		12월 24일	廣東省 5屆人大常委會 4개항의 經濟特區法規 공포
1982년		1982년 2월 4일	深圳·特區分界線建設工程 指揮部 설치
		3월 12일	福建省 第5屆人大 4次會議 4개항의 經濟特區 관계 법령 통과시킴
6월	中共國務院에 經濟特區辦公室 설치	6월 6일 ~14일	廣東省, 經濟特區學術討論會 개최
		9월 中旬	香港의 전문가와 學者를 深圳에 초빙·深圳特區發展計劃을 마련

資料: 1. 「美中貿易(The China Business Review)」,

2. *Business China*.

3. 「大公報(香港)」.

4. 「文匯報(香港)」.

5. 「經濟導報(香港)」.

6. 中國における合併事業の成立可能性と地域經濟協力.

7. 其他有關資料彙編.

張榮豐, 「經濟特區之研究」(台北, 中華經濟研究院, 1983)에서 再引用.

5) 1983년 말 현재, 特區(특히 深圳, 珠海)에 對한 投資額中 홍콩으로부터의 投資가 90% 이상이다.

위탁가공, 보상무역등은 거의 다 홍콩으로부터의 것이고, 많은 外國投資家들이 部品の 공급기지, 수출기지 혹은 技術者들의 파견기지로써 홍콩을 對中共投資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外資에도 홍콩資本과 공동으로 特區에 進出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中國系 홍콩인이 中共內에 가지고 있는 人脈의 利用 및 投資의 危險分散을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中國系 홍콩인의 情報蒐集의 신속함 또는 進出에 同伴한 언어장벽의 해소 등 外國資本家들에 對한 홍콩의 利用價値는 극히 높은 것으로 評價된다.

經濟特區 投資額의 90%以上이 홍콩으로 부터의 投資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볼 때 홍콩의 經濟變動이 特區에 주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中共의 홍콩에 對한 主權회복은 時間問題로 되어 있어 中共이 홍콩全體에 對한 主權회복후 홍콩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영향은 經濟特區開發의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對外經濟開放政策의 모델로서의 經濟特區開發의 늦어짐은 國內의 批判派에게 反對의 口實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中共은 홍콩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中共이 開發中인 四個의 特區中 홍콩에 인접해 있으며 그 규모나 개발의 진척도에서 가장 크고 빨라 다른 特區의 모델이 되고 있는 深圳特區의 現況을 보면, 深圳特區는 深圳市(2,020km²)의 一部로서 行政的으로 는 深圳人民政府아래에 統一되어 있으나 開發의 主體는 蛇口工業區가 홍콩招商局, 赤灣地區가 南山開發公司, 그 외를 深圳特區建設公司가 분담하고 있다.⁶⁾

深圳特區의 開發計劃은 地域別로 東部·中部·西部의 3地區로 區分되며 다시 기능별로 18區로 區劃되어 있다. 基本建設投資는⁷⁾ 1979년 1억 6천

6) 南山開發公司是「홍콩」招商局, 南海石油東部公司, 深圳特區開發公司, 中共建設財務有限公司, 華潤公司 및 黃振輝投資有限公司 등 6個社의 共同出資會社로 1982年 6月 14日 開發, 建設公司是「인프라스트럭처」部門開發을 담당.

7) 主로 土地整理, 道路網建設, 電力設備등의 開發에 대한 投資이다.

만원, 1980~81年 2억 8천만원, 1982年 5억 4천만원, 1983年 9억 8천만원으로 1979~83年間 19억 6,372 만원에 달하였으며 이 기간中 工業總生産額은 1979年の 6,061 만원으로부터 1983년에는 7억 2,041 만원으로 약 12倍 증가하였다.

1983年末까지의 外資導入 總契約件數는 2,512件에 契約額 약 132억 홍콩달러(既投資額 29억 홍콩달러)에 달하고, 投資形態別로는 合併, 合作, 獨資形態의 投資件數가 1983년에 급격히 增加되었고 1979~1983年 間에는 合併 127件, 合作 289件, 獨資 44件으로, 주목되는 것은 100%의 外資投資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深圳經濟特區開發公司의 外資導入部가 밝힌 外資導入 希望分野로는 電子工業全般, 石油化學工業, 輕工業, 建築材料關聯業, 觀光業 등의 分野이다. 그 외에 投資方式에서는 合作經營내지 外國人企業의 單獨法人 設立方式에 의한 投資가 金額面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合作經營 56.76%, 單獨法人設立 32.95%)있으며 이러한 投資方式에 의한 投資分野는 부동산과 레저·관광업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끝으로, 深圳市當局이 發表한 第7次 5個年計劃(1986~1990)의 大綱內容, 즉 1990年까지의 發展構想을 보면 ①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新都市建設, ② 對外貿易擴大 및 중계무역, ③ 工業生産의 加速化, ④ 技術·管理水準의 向上과 精神文明의 建設 등의 內容이 포함되어 있다.⁸⁾

2. 投資環境

1978年 全國財政商業會議에서 당시 副首相 余秋里가 外國資本導入意向을 처음 밝힌 이후, 1979年 7月 外國人의 中共內 直接投資를 허용하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制定·公布하였고, 1980年 9月 第五期 全人大 第三次 會議에서 合資經營企業에 관한 企業登錄法, 勞動法, 法人稅法, 所得稅法 등을 공포함으로써 外國企業의 中共內 투자유치를 위한 本格的인 法的 補完을 추진하여 오던 中, 1982年 단순한 外資만을 導入하거나

8) 「深圳特區報」(1984. 8. 6) 深圳市場 梁湘發表文 참조.

技術 및 設備을 도입하기 보다는 合營方式에 重點을 두어 先進技術 및 經營관리방식의 습득에 主力하기 始作하였다.⁹⁾ 한편, 1983年 4月 中共國家經濟委員會 代변인 李灝가 合營企業에 對한 投資促進策을 밝히는 가운데 合營企業이 輸入하는 기계, 설비 및 자재에 對하여는 關稅와 工商稅(사업세) 免除, 製品的의 수출의무의 완화, 企業所得稅의 免除期間 1年에서 2年, 소득세 감면조치 2年에서 3年으로 연장하는 등 外國投資企業의 우대조치를 強化하겠다고¹⁰⁾ 한 以後, 中共은 合營企業에 대한 우대조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經濟特區의 體制

中共의 經濟特區설치 취지는 '對外經濟協력과 技術交流를 發展시키며 社會主義現代化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라고 「廣東省經濟特區條例」¹¹⁾ 第1條에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 經濟特區와 관련된 法規들은 「廣東省經濟特區出入管理暫定規定」, 「廣東省經濟特區企業登記管理暫定規定」, 「廣東省經濟特區企業勞務賃金管理暫定規定」, 「深圳經濟特區土地管理暫定規定」(以上 82. 11. 17), 「深圳市工業區管理條例」(82. 10), 「深圳經濟特區涉外經濟契約規定」(84. 2. 7), 「深圳經濟特區技術導入暫定規定」(84. 2. 7), 「深圳經濟特區企業登記管理施行細則」(84. 2. 9) 등이 있다. 이러한 法規, 規定 또는 一般法規에 근거한 中共經濟特區의 體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廣東省域內에 設置된 特區는 深圳, 珠海, 汕頭 3個所이고 이 중 深圳特區는 蛇口工業區를 포함하고 있다. 行政上으로는 廣東省地方政府가 深圳特區를 직접 지도하며, 珠海 및 汕頭特區는 각각의 市政府가 管轄지도하나, 業務上으로는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가 廣東省地方政府를 代表하여 省內 各特區를 統轄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¹²⁾ 그 職權은 ① 特區

9) "關於我國的對外經濟關係問題", 「紅旗」, 1982年 8期, pp. 2~10.

10) 「新華社通信」(1983. 4. 8).

11) 1980年 8月 26日 第5期 全人代常務委에서 承認, 公布된 最初の 經濟特區에 관한 法令이다.

12) 「廣東省特區條例」, 第三條 參照.

의 開發計劃作成 및 組織構成, ② 特區內 外國企業의 投資業種 및 事業의 심사·승인, ③ 特區內 商工業登記 및 土地配定, ④ 特區內 銀行, 保險, 稅務, 稅關, 境域檢査, 遞信 등의 관련기구에의 業務協助, ⑤ 特區內 企業에 노동자알선 및 권익보호, ⑥ 特區內 敎育, 文化, 衛生 및 各種 公益事業 追進, ⑦ 特區內 治安維持 및 人身·財產保護 등으로 되어 있다.¹³⁾

深圳特區는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의 직접지도를, 珠海와 汕頭特區는 必要한 業務處理機構를 별도로 설치하고 同委員會의 間接的인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¹⁴⁾

한편, 深圳市政府는 蛇口工業區에 「招商局蛇口工業建設指揮部」를 設置하여 國務院 交通部와 함께 지도·관리하고 있고 珠海·汕頭市政府도 각각 '珠海經濟特區管理委員會'와 '汕頭經濟特區管理委員會'를 設立하여 特區를 管理하고 있으며 福建省은 廣東省의 例에 따라 廈門市政府 아래에 '廈門經濟特區管理委員會'를 두어 特區內의 業務를 통괄한다.

省級以上에서는 中央政府가 「對外經濟貿易部」를 통해 廣東·福建 兩省政府에 대하여 率下 經濟特區의 對外經濟·貿易·合作活動에 協助하고 있으며 「對外經濟貿易部」以外에 國務院 직속으로 「經濟特區辦公室」를 設置하여 각 경제특구의 狀況報告 및 主要投資項目을 심사하고, 外國企業의 特區進出에 대해서 國務院의 認可알선 및 지원에 관한 事項을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기구 이외에 各 特區는 별도로 專門家나 協力人士들로 組織한 「顧問委員會」를 두어 해당특구의 자문기구로 活用하고 있으며,¹⁵⁾ 同時에 노동자채용 및 권익보호를 위한 「勞動服務公司」, 信託·投資業務 등을 담당하는 「廣東省經濟特區發展公司」¹⁶⁾, 그리고 蛇口를 제외한 深圳市全體의 投資 및 外國企業의 投資商談을 담당하는 「深圳對外經濟技術連絡辦公室」 등이 있다.

13) 上同, 第23條 參照.

14) 上同, 第24條 參照.

15) 上同, 第6條 參照.

16) 上同, 第25條 參照.

특히 대외연계를 위해 廣東省이 홍콩에 設立한 해외주재기구中 「經濟特區連絡部」는 각 特區에 投資할 意思가 있는 外國企業과의 연계를 專門的으로 責任지며 同時에 中央의 交通部가 홍콩에 設立한 招商局은 蛇口工業區의 投資事業 유치를 專門的으로 責任진다.

(2) 投資條件 및 節次

「廣東省經濟特區條例」第四條, 第五條에 의하면 外國人의 特區內 투자 범위는 工業, 農業, 牧畜業, 養殖業, 觀光業, 住宅 및 建築業, 그리고 高級技術研究와 관련된 製造業 등으로 넓고 심지어 特區內의 土地工事, 用水, 用電 등의 供給과 도로, 항만시설 통신, 창고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분야에 대한 外國企業의 投資·開發이 許用되어 있다.

投資方式에 있어서도 委託加工, 合資, 合作外에 外資 100%投資(獨資) 등 다양하고, 特區內의 기업이 혜택받는 租稅는 '關稅'와 '所得稅'의 2種으로 關稅의 경우, 通常 각 '經濟特區管理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輸入되어 각 經濟特區內에서의 使用目的으로 供給되는 기기설비, 원재료, 부품 내지 소비재등은 그것이 담배, 주류 등 일부 소수품목의 경우 中共의 최저수입세율에 따라 輸入稅 50%감면 이외 나머지 輸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輸入關稅를 免除해 주고, 所得稅의 경우 廣東省 3個特區는 「廣東省經濟特區條例」 및 기타 相關규정에 따른다. 세율 方面에서는, 深圳, 珠海汕頭, 廈門特區의 企業所得稅는 공히 15%로 同一하고, 個人所得稅는 「個人所得稅法」과 그 施行細則의 징세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特區內 企業의 生産製品의 판매는 原則的으로 輸出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일 同製品이 關稅區域內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의 許可를 받고 세관에 관세납부수속을 밟도록 되어 있으나¹⁷⁾ 深圳特區는 外資導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① 관세구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그 企業의 전체물량이 아니고 一部分인 경우를 原則으로 하며 ② 製造技術이 先進的이거나, ③ 中共產 原材料의 사용비율이 비교적 높거

17) 上同, 第9條 參照.

나, ④ 수입대체효과가 큰 工業製品의 價格條件이 동일하다면 深圳特區內 生産製品을 우선 구매한다는 條件으로 特區內 合資 또는 外資企業의 生産 製品에 대한 關稅區域內 판매제한 규정을 완화 해주고 있다.

特區內의 投資節次는 「深圳經濟特區 涉外經濟契約規定」에 合併, 合作, 보상무역, 위탁가공 및 獨資 등 各種 形態의 外資導入契約의 節次가 明示 되어 있고, 또한 「深圳經濟特區企業登記管理施行細則」에는 深圳市 工商行 政管理局의 登記申請方法, 登記料 등이 具體的으로 明示되어 있다.

IV. 展 望

加工輸出地區가 꼭 港灣附近에 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重要的 地 理條件은 交通이 便利하고 國際貿易港이나 空港과의 연결이 원할한 곳 이 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中共의 경제특구 4곳은 모두 國際港口 부근에 위치하여 비교적 良好한 편이나 基本建設面에서 深圳과 珠海特區 는 오랜 동안의 변방지역 봉쇄정책의 영향으로 비교적 낙후되어 있었고, 特區의 면적으로도 세계에서 제일 넓은 特區의 하나로서 基本建設에 상당 한 時日을 所要하게 될 것이므로 수송면에서의 부담이 加重될 것이며, 한편 基本建設投資資金의 一部를 '土地輸出方式'을 통해 調達하고 있어 경 제특구내의 地代를 상승시킬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中共特區의 立地的 특징은 국내보다 海外와의 交通망연계가 잘 이 루어져 있는 곳을 선정한 것을 볼 때 이는 전술한 바 대로 한편으로는 特 區設置로 문호개방을 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를 資本主義的 物質文明에 의한 '정신오염'을 防止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特區政策이 失敗할 때 야기 될지도 모를 파급효과를 最少化하려는 意圖로 보인다. 이러한 입지선정은 특구내 企業에게 原料輸入등에 있어서는 中共關稅區域內 企業보다 有利한 지 모르나 그 後方關聯效果面에서는 不利한 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中共의 經濟特區가 投資環境面에서 아직은 그 利點이 충분히 살

려지고 있지 않으나 有利한 條件으로는 ① 저렴한 명목임금수준, ② 기업 소득세율의 우대조치, ③ 良好한 地理的 立地條件 등으로 볼 수 있고 不利한 條件으로는 ① 政治·經濟的 不安定性, ② 社會間接資本을 비롯한 基本建設施設의 未備點 및 높은 地代, ③ 經濟特區 管理體系에 있어 行政과 業務의 分離에 따른 全體의인 協力體制 構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點 等일 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經濟特區開發의 장래를 展望해 볼 때, 中共의 現實主義政權의 安定的인 政策實現基盤이 흔들리지 않는 限, 對外開放政策의 具體的 政策表現이며 교두보라 할 수 있는 特區의 開發政策은 계속 推進해 나갈 것이 확실시되며 將次 內陸의 各 都市에도 이와 유사한 開放措置가 과급될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經濟特區開發에 現在 華僑를 除外한 美國·日本 등 西方先進國의 外國人投資家들은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形편으로 이들 西方投資家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인 낮은 勞動生産性問題는 앞으로 特區 뿐 아니라 中共 全域에 對한 西方投資家들의 進出에 상당한 制約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經濟特區政策의 成敗여부는 現 中共政權의 政治的 安定性問題와 美國·日本 등 西方先進國들이 經濟特區開發에 얼마만큼의 積極성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北韓은 中共이 西方先進國과의 經濟·技術交流 및 合作投資유치를 目的으로 한 制度的 장치인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모방하여 「合營法」을 제정(1984. 9. 8. 外國合作投資經營法)한 것은 從來의 “外國資本導入은 예측과 망국의 길”이라는 自力更生原則에 입각한 폐쇄경제체제로부터 西方資本主義國家들과의 經濟協力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상징적이고도 具體的인 變化의 表現으로서 長期的으로 볼 때, 中共의 開放化政策이 北韓 역시 開放的이고 實用主義的인 方向으로 나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附 錄〉

1.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1979. 7. 1 全國人民代表大會 第2次 大會에서 採擇)

(1979. 7. 8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委員長令 第7號로 公布)

(出處: 人民日報 1979. 7. 9)

第1條 中華人民共和國는 國際經濟協力과 技術交流를 擴大하기 위하여 外國의 會社企業 其他 經濟組織 또는 個人(以下 “外國側 合營者” 라 略稱한다) 이 平等互惠의 原則에 따라 中國政府의 認可를 받아 中華人民共和國內에서 中國의 公司·企業 其他 經濟組織(以下 “中國側 合營者”라 略稱한다)과 共同으로 合營企業을 設立하는 것을 許可한다.

第2條 中國政府는 外國側 合營者의, 中國政府의 認可를 받은 協定·契約 定款에 依한 合營企業에서의 投資, 取得하여야 할 相應한 利益 其他 合法的인 權益을 法律에 依하여 保護한다.

第3條 合營 當事者間에 締結한 協定·契約 및 定款은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管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하며, 同 委員會는 3個月 以內에 이 에 대한 認可 또는 不認可를 決定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은 許可를 받은 경우, 中華人民共和國 工商行政管理總局에 登錄하고 營業認可證을 交付 받아 營業을 開始한다.

第4條 ① 合營企業의 形態는 有限責任會社로 한다. 合營企業의 登錄資本中 外國側 合營者의 投資比率는 一般的으로 100分의 25를 下廻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合營者는 各各의 登錄資本의 比率에 따라 利益을 分配하고 危險과 缺損을 分擔한다.

③ 合營者의 登錄資本을 讓渡할 때에는 반드시 相對方 合營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5條 ① 合營企業의 各 當事者는 現金, 現物, 工業所有權등으로 投資할 수 있다.

② 外國側 合營者가 投資로 한 技術 또는 設備는 만드시 우리나라가 必要로 하는 技術 또는 設備이어야 한다. 故意로 落後된 技術과 設備로 欺瞞하여 損害를 입힌 때에는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③ 中國側 合營者의 投資에는 合營企業의 經營期間中에 提供하는 土地使用權을 包含할 수 있다. 土地使用權을 中國側 合營者의 投資의 一部로 하지 아니하는 때 合營企業은 中國政府에 使用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④ 上記한 各 項의 投資에 대하여는 合營企業의 契約 및 定款에 定하여야 한다. 그 價格(다만, 土地에 대하여는 除外한다)은 合營 當事者間에 協議하여 決定한다.

第6條 ① 合營企業에는 理事會를 두고 그 人員과 構成은 合營 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여 契約과 定款에 明記한다. 또한 合營 當事者가 各各의 理事會에는 中國側 合營者에 의하여 選任된 理事長 1名과 外國側 合營者에 의하여 選任된 1名 또는 2名의 副理事長을 둔다. 理事會가 重要問題를 處理할 때에는 合營 當事者가 互惠平等의 原則에 따라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② 理事會의 職權은 合營企業의 定款에 定한다. 理事會는 企業發展計劃, 生産經營活動案, 豫算의 收入·支出, 利益의 分配, 勞動賃金計劃, 營業의 停止 및 社長·副社長·技師長·經理部長·會計監查部長의 任命 또는 招請 그 職權과 待遇등 合營企業의 모든 重要問題를 討議·決定한다

③ 社長 및 副社長(또는 工場長 및 副工場長)은 合營 當事者가 各各 分擔하는 것으로 한다.

④ 合營企業의 從業員의 雇用 및 解雇는 法律에 의하여 合營 當事者間의 協定 및 契約에 의하여 定하는 것으로 한다.

第7條 ① 合營企業의 總利益에서 中華人民共和國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에 課稅된 合營企業 所得稅를 納付한 後 다시 合營企業의 定款에 定한

準備基金, 從業員獎勵 및 福祉基金, 企業發展基金을 控除하여 取得한 純利益은 合營 各當事者의 登錄資本의 比率에 따라 配當되는 것으로 한다.

② 世界의 先進技術水準을 갖춘 合營企業은 利益을 내기 始作한 最初의 2年 내지 3年間은 所得稅의 減免을 申請할 수 있다.

③ 外國側 合營者가 取得한 純利益을 中國 國內에 再投資할 때에는 既納付한 所得稅의 一部 還給을 申請할 수 있다.

第8條 ① 合營企業은 中國銀行 또는 中國銀行의 同意를 얻은 銀行에 去來口座를 開設하여야 한다.

② 合營企業의 外貨에 關한 事項은 『中華人民共和國 外換管理條例』를 遵守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③ 合營企業은 그 經營活動에 있어서 外國銀行으로부터 直接 資金을 調達할 수 있다.

④ 合營企業의 各種 保險은 中國保險公司에 加入하여야 한다.

第9條 ① 合營企業의 生産經營企業은 主管部署에 提出하여 公簿에 올리며 또한 經濟契約에 定하였던 方式에 依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② 合營企業이 必要로 하는 原材料·燃料 및 附帶設備등은 中國에서 優先적으로 購買하여야 한다. 다만, 合營企業 自體가 調達한 外貨에 依하여 直接 國際市場에서 購買할 수도 있다.

③ 合營企業이 中國 國外에 製品을 販賣하는 것을 獎勵한다. 合營企業은 直接 또는 關聯 委託機關을 通하여 輸出用 製品을 國外市場에 販賣할 수 있으며 또는 中國의 對外貿易機關을 通하여 販賣할 수도 있다. 合營企業의 製品은 中國市場에서 販賣할 수도 있다.

④ 合營企業이 必要로 할 때에는 中國 國外에 그 支社를 設置할 수 있다.

第10條 ① 外國側合營者가 法律, 協定 및 契約에 規定된 義務의 履行後에 取得한 純利益, 合營企業의 期間滿了 또는 解散時에 取得한 資金 및 其他의 資金은 合營企業의 契約에 定하여진 通貨에 依하여 中國銀行을 通하고 外換管理條例에 依據하여 國外에 送金할 수 있다.

② 外國側 合營자가 送金할 수 있는 外貨를 中國銀行에 預入하는 것을 獎勵한다.

第11條 合營企業의 外國籍 從業員의 賃金所得 其他 正當한 所得은 中華人民共和國 稅法에 의하여 個人所得稅를 納付한 後 中國銀行을 通하여 外換管理條例에 依據하여 國外에 送金할 수 있다.

第12條 合營企業의 契約期間은 營業의 種別 또는 各各의 狀況에 따라 合營 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여 定할 수 있다. 合營企業의 契約期間 滿了 後에 當事者 雙方이 同意하고 또한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管理委員會에 申請하여 認可를 받을 경우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契約期間 延長의 申請은 契約期間 滿了 6個月 以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3條 合營企業의 契約期間 滿了前에 重大한 缺損, 契約 및 定款에 規定된 義務의 一方的 不履行 또는 不可抗力등이 發生한 때 合營 當事者는 協議에 의한 同意에 의하여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管理委員會에 申請하여 認可를 받고 또한 工商行政管理總局에 登錄할 경우 契約을 早期 終了할 수 있다. 契約違反에 의한 損害가 發生한 때 契約違反 當事者는 經濟的 責任을 負擔하여야 한다.

第14條 合營 當事者間에 紛爭이 發生하고 理事會의 協議에 의한 解決이 不可能한 때에는 中國의 仲裁機關이 調停 또는 仲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合營 當事者의 協議에 의하여 其他의 仲裁機關이 仲裁할 수도 있다.

第15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法의 修正 및 改正 權은 全國人民代表大會에 屬한다.

2.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

(1983年 9月 20日, 國務院 公布)

(出處: 經濟導報 1983年 第40期)

第1章 總 則

第1條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以下 “中外合營企業法”)이라

略稱한다)의 順調로운 實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特別히 本 條例를 制定한다.

第2條 中外合營企業法에 의하여 中國 國內에서의 設立을 認可받은 中外合資經營企業(以下 “合營企業”이라 略稱한다)은 中國의 法人이며 中國 法律의 管轄과 保護를 받는다.

第3條 中國 國內에 設立된 合營企業은 中國의 經濟發展과 科學技術水準의 向上을 促進하고 社會主義現代化建設에 寄與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의 設立을 認定하는 主要 業種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開發, 建築材料工業, 化學工業, 冶金工業
2. 機械製造工業, 機器·計器工業, 海洋石油採掘設備의 製造業
3. 電子工業, 計算機工業, 通信設備의 製造業
4. 輕工業, 紡織工業, 食品工業, 醫藥品 및 醫料用機器工業, 包裝工業
5. 農業, 牧畜業, 養殖業
6. 觀光 및 「서비스」業

第4條 設立을 申請하는 合營企業은 經濟的 效果를 重視하고 다음의 一個號 또는 數個號의 要求에 合致되어야 한다.

1. 先進的 技術設備과 科學的 管理方法을 採用하여 製品의 品種을 增加시키고 製品의 品質과 生産量을 提高시키며 「에너지」와 材料를 節約할 수 있을 것
2. 企業의 技術改善에 有利하고 적은 投資로써 빠른 效果가 나타나며 큰 收益을 얻을 수 있을 것
3. 製品輸出을 擴大하고 外貨收入을 增加시킬 수 있을 것
4. 技術者와 經營管理者를 育成·訓練시킬 수 있을 것

第5條 設立을 申請하는 合營企業이 다음의 各項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設立을 認可하지 아니한다.

1. 中國의 主權을 損傷시키는 경우
2. 中國의 法律에 違反하는 경우

3. 中國의 國民經濟發展의 要求에 合致되지 아니하는 경우
4. 環境汚染을 發生시키는 경우
5. 締結된 協定, 契約, 定款이 明確히 不公平한 것으로서 合營者 一方의 權利·利益에 損害를 미치는 경우

第6條 ① 別途로 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中國側 合營者의 政府主管部署는 合營企業의 主管部署(以下 “企業主管部署”라 略稱한다)이다. 合營企業의 中國側 合營者가 둘 以上이고 또한 다른 部署 또는 地域에 所屬하는 때에는 關係있는 部署 또는 地域에서 協議에 依하여 1個의 企業主管部署를 決定한다.

② 企業主管部署는 合營企業에 대하여 指導·支援·監督의 責任을 진다.

第7條 企業主管部署는 法律·法規 및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定한 範圍內에서 自主的으로 經營管理를 行할 權限을 가진다. 關係 各部署는 이를 支持, 協力하여야 한다.

第2章 設立과 登記

第8條 ① 中國 國內에 合營企業을 設立할 때에는 中華人民共和國對外經濟貿易部(以下 “對外經濟貿易部”라 略稱한다)의 審査·認可를 받아야 한다. 對外經濟貿易部는 認可後 認可證書를 發給한다.

② 다음의 條件을 具備한 경우, 對外經濟貿易部는 關係있는 省·自治區 直轄市人民政府 또는 國務院의 關係 部·局(以下 “受託機關”이라 略稱한다)에 認可를 委託할 수 있다.

1. 投資總額이 國務院이 定하는 金額內이며 中國側 合營者의 資金調達先이 이미 確保되어 있는 것.
2. 國家에 依한 原材料의 追加支給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고 燃料, 動力, 交通, 輸送, 輸出割當 등의 全國的 調整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③ 受託機關은 合營企業의 設立을 認可한 後 對外經濟貿易部에 報告하

여 公簿에 올리는 것으로 하며 對外經濟貿易部는 認可證書를 發給한다(以下 對外經濟貿易部와 受託機關을 “認可機關”이라 統稱한다).

第9條 ① 合營企業을 設立할 때에는 다음의 手續을 取한다.

1. 中國側 合營者가 企業主管部署에 對하여 外國側 合營者와 合營企業을 設立하겠다는 事業의 建議書 및 初步的 企業化調查(Pre-feasibility Study)報告를 提出한다. 同 建議書와 初步的 企業化 調查報告가 企業主管部署의 審査·同意를 받고 또한 認可機關에 送付되어 認可된 後 各 當事者는 비로소 企業化調查(Feasibility Study)를 中心으로 하는 諸作業을 行할 수 있으며, 이를 基礎로 하여 協議한 後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을 締結한다.

2. 合營企業의 設立을 申請할 때에는 中國側 合營者가 責任을 지고 다음의 正式書類를 提出한다.

(1) 合營企業 設立의 申請書

(2) 合營 當事者가 共同으로 作成한 企業化調查報告

(3) 合營 當事者의 授權代表가 署名한 合營企業의 協定·契約 및 定款

(4) 合營 當事者가 指名한 合營企業의 理事長·副理事長·理事의 名簿

(5) 中國側 合營者의 企業主管部署 및 合營企業所在地의 省·自治區·直轄市 人民政府가 當該 合營企業의 設立에 對하여 記述한 意見

② 上記한 各書類는 中國語로 記入하여야 한다. 其中 (2), (3), (4)의 書類는 同時에 各當事者가 協定한 1個의 外國語로 記入할 수도 있다.

2種의 文字로 記入된 書類는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第10條 認可機關은 本 條例의 第9條 第2項에 定하는 全書類를 受取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認可 또는 不認可를 決定한다. 認可機關은 上記書類에서 不適切한 點을 發見한 경우 期限付 修正을 要求하여야 하며 이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 認可하지 아니한다.

第11條 申請者는 認可證書를 受取한 後 1個月 以內에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登記管理規則』의 規定에 따라 認可證書를 所持하고 合營企業所在地의 省·自治區·直轄市 工商行政管理局(以下 “登記管理機關”이라 略稱한다)에서 登記手續을 取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의 營業許可證이 交付된 날을 當該 合營企業의 創立日로 한다.

第12條 外國投資家が 中國에서 合營企業을 設立하고자 하나 中國側의 具體的인 協力相對가 없는 경우에는 合營企業의 基礎方案을 提出하고 中國國際投資公司 또는 關係 省·自治區·直轄市의 信託投資機關 및 關係 政府部署, 民間組織에 委任하여 協力相對를 紹介받을 수 있다.

第13條 ①本章에서 “合營企業協定”이라 함은 各 當事者가 合營企業 設立의 一部 要點 및 原則에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아 作成한 書類를 말한다.

② “合營企業契約”이라 함은 各 當事者가 合營企業의 設立을 위하여 相互의 權利·義務關係에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아 作成한 書類를 말한다.

③ “合營企業定款”은 合營企業契約에 定하는 原則에 따라 各 當事者의 一致된 同意를 거쳐 合營企業의 目的·組織原則 및 經營管理方法 등 의 事項을 定하는 書類이다.

④ 合營企業協定과 合營企業契約이 抵觸되는 때에는 合營企業契約에 準據한다.

⑤ 各 當事者의 同意가 있을 경우에는 合營企業協定을 作成하지 아니하고 合營企業契約 및 定款만을 作成할 수 있다.

第14條 ① 合營企業契約에는 다음의 主要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各 當事者의 名稱·登記國·法定所在地 및 法定代表의 姓名·職務·國籍
2. 合營企業의 名稱·法定所在地·目的·經營範圍 및 規模
3. 合營企業의 投資總額·資本金, 各 當事者의 出資額·出資比率·出資方式·出資拂入期間 및 出資額의 未納·讓渡에 關한 規定
4. 各 當事者의 利益分配 및 缺損分擔의 比率
5. 合營企業理事會의 構成, 理事定員의 配分 및 社長·副社長 其他

高級管理者의 職責·權限·招請方法

6. 採用하는 主要 生産設備·生産技術과 그 調達先
7. 原材料購買와 製品販賣의 方式, 製品의 中國 國內과 國外에서의 販賣比率
8. 外貨資金의 收支計劃
9. 財務·會計·監査의 處理原則
10. 勞務管理·賃金·福利·勞動保險 等の 事項에 關한 規定
11. 合營企業의 期間, 解散과 清算의 手續
12. 契約違反의 責任
13. 各 當事者間의 紛爭을 解決하는 方式과 手續
14. 契約의 本文에 採用하는 文字와 契約發效의 條件

第15條 ① 合營企業契約의 添附書類는 合營企業契約과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② 合營企業契約의 締結·效力·解釋·執行 및 그 紛爭의 解決에는 모두 中國의 法律을 適用한다.

第16條 合營企業定款에는 다음의 主要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合營企業의 名稱 및 法定所在地
2. 合營企業의 目的·經營範圍 및 合營期間
3. 各 當事者의 名稱·登記國·法定所在地, 法定代表의 姓名·職務·國籍
4. 合營企業의 投資總額·資本金·各 當事者의 出資額·出資比率·出資額의 讓渡規定, 利益分配과 缺損分擔의 比率
5. 理事會의 構成·職權 및 議事規則, 理事의 任期, 理事長·副理事長의 職責
6. 管理機關의 配置·執務規則, 社長·副社長 其他 高級管理者의 職責과 任免方法
7. 財務·會計·監査制度의 原則

- 8. 解散 및 清算
- 9. 定款의 改正節次

第17條 合營企業의 協定·契約 및 定款은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은 後 效力을 發生한다. 그 改正時에도 마찬가지이다.

第18條 認可機關과 登記管理機關은 合營企業의 契約·定款의 執行에 대하여 監督·檢査의 責任을 진다.

第3章 組織形態와 資本金

第19條 ① 合營企業은 有限責任會社로 한다.

② 各 當事者의 合營企業에 대한 責任은 各各 負擔한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第20條 合營企業의 投資總額(企業借入金을 包含한다)이라 함은 合營企業 契約·定款에 定하는 生産規模에 따라 投下할 必要가 있는 基本建設資金과 生産·運轉資金의 總計를 말한다.

第21條 ① 合營企業의 資本金이라 함은 合營企業 設立을 위하여 登記管理機關에 登記한 資本總額을 말하며 各 當事者가 負擔한 出資額의 합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合營企業의 資本金은 一般的으로 人民元으로 表示하여야 하나 各 當事者가 約定한 外國通貨로 表示할 수도 있다.

第22條 合營企業은 合營期間中 資本金을 減少시켜서는 아니된다.

第23條 ① 一方의 當事者가 出資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第3者에게 讓渡할 경우에는 相對方 當事者의 同意를 얻고 또한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一方이 出資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할 때 相對方은 先買權을 가진다.

③ 一方이 第3者에게 出資額을 讓渡하는 條件은 相對方에게 讓渡하는 條件보다 優待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上記의 規定에 違反한 경우 그 讓渡는 無効로 한다.

第24條 合營企業의 資本金의 增額·讓渡 또는 其他 方式에 의한 處置는 理事會에서 議決하고 또한 原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 原登記管理機關에서 變更登記의 手續을 取하여야 한다.

第4章 出資方式

第25條 合營者는 通貨로써 出資할 수도 있으며 建築物, 工場建物, 機械設備 其他의 物料, 工業所有權, 技術「노하우」, 土地使用權 等を 評價하여 出資할 수도 있다. 建築物, 工場建物, 機械設備 其他의 物料, 工業所有權, 技術「노하우」로 出資할 경우 그 評價는 各 當事者가 公平合理의 原則에 따라 協議·決定하거나 各 當事者가 同意하는 第3者에게 評定을 依賴한다.

第26條 ① 外國側 合營者가 出資하는 外國通貨는 拂入日에 中華人民共和國 國家外換管理局(以下 “國家外換管理局”이라 略稱한다) 이 發表한 換率에 따라 人民幣으로 換算하거나 또는 約定한 外國通貨로 算入한다.

② 中國側 合營者가 出資한 人民幣의 現金을 外國通貨로 換算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拂入日에 國家外換管理局이 發表한 換率에 依한다.

第27條 外國側 合營者가 出資하는 機械設備 其他의 物料는 다음의 各 條件에 合致되어야 한다.

1. 合營企業의 生産에 不可缺한 것일 것
2. 中國에서 生産할 수 없는 것 또는 生産할 수는 있으나 價格이 높거나 技術性能 및 供給時期에 있어서 必要를 充足시킬 수 없는 것
3. 評價는 同種의 機械設備 其他 物料의 該 時點에서의, 國際市場價格을 上廻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8條 外國側 合營者가 出資하는 工業所有權 또는 技術「노하우」는 다음 條件의 1에 合致되어야 한다.

1. 中國에서 緊急히 必要한 新製品 또는 需要가 많은 輸出品을 生産

할 수 있는 것

2. 既存製品의 性能·品質을 顯著히 改善하고 生産能率을 向上시킬 수 있는 것

3. 原材料·燃料·動力을 顯著히 節約할 수 있는 것

第29條 外國側 合營者가 工業所有權 또는 技術「노하우」로 出資할 때에는 合營契約의 添附書類로서 當該 工業所有權 또는 技術「노하우」의 關係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이것에는 特許證書 또는 商標登錄證書의 寫本, 有効성과 그 技術의 特性, 實用價值, 評價計算의 根據, 中國側 合營者와 締結한 評價協定 等の 關係書類가 包含된다.

第30條 外國側 合營者가 出資하는 機械設備 其他의 物料, 工業所有權 또는 技術「노하우」는 中國側 合營者의 企業主管部署의 審査·同意를 받고 또한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1條 各 當事者는 契約에 定한 期限에 各各의 出資額의 拂入을 完了하여야 한다. 期間을 經過하고도 拂入하지 아니하거나 拂入을 完了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契約의 規定에 따라 延滯利子를 支拂하거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32條 各 當事者가 出資額을 拂入한 後에는 中國에 登錄된 會計士가 이를 檢證하고 出資檢證報告를 發行한다. 合營企業은 이에 根據하여 出資證明書를 發給한다. 出資證明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明記한다: 合營企業의 名稱, 合營企業의 創立年月日, 合營者의 名稱(또는 姓名)과 그의 出額資·出資年月日, 出資證明書의 發給年月日.

第5章 理事會와 經營管理機關

第33條 理事會는 合營企業의 最高權力機關이며 合營企業의 모든 重大問題를 決定한다.

第34條 ① 理事會의 成員은 3人을 下廻하여서는 아니된다. 理事會의 定員配分은 各 當事者가 出資比率을 參照하여 決定한다.

② 理事는 各 當事者가 指名한다. 理事長은 中國側 合營者가 指名하고 副理事長은 外國側 合營者가 指名한다.

③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各 當事者가 계속 指名할 경우에는 連任할 수 있다.

第35條 ① 理事會는 每年 적어도 1回 開催하며 理事長이 召集 및 主宰한다. 理事長이 召集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長이 副理事長 其他 理事에게 召集 또 主宰를 委任한다. 3分の 1 以上の 理事의 提議가 있을 경우 理事長은 臨時理事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② 理事會는 3分の 2 以上の 理事가 出席하여야만 開催할 수 있다. 出席할 수 없는 理事는 委任狀을 提出하여 他人에게 出席과 表決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 理事會는 一般的으로 合營企業의 法定所在地에서 開催하여야 한다.

第36條 ① 다음의 事項은 理事會에 出席한 理事의 全員一致에 의하여만 議決할 수 있다.

1. 合營企業定款의 改正
2. 合營企業의 中途解散과 解散
3. 合營企業의 資本金의 增額·讓渡
4. 合營企業과 他 經濟組織과의 合併

② 其他의 事項은 合營企業의 定款에 明記된 議事規則에 의하여 議決할 수 있다.

第37條 理事長은 合營企業의 法定代表이다. 理事長이 職責을 履行할 수 없는 때에는 副理事長 其他의 理事에게 合營企業을 代表하는 權限을 賦與하여야 한다.

第38條 合營企業은 經營管理機關을 設立하여 企業의 日常經營管理를 擔當케 한다. 經營管理機關에는 社長 1名, 副社長 若干名을 둔다. 副社長은 社長의 職務를 補佐한다.

第39條 社長은 理事會의 諸議決을 執行하고 合營企業의 日常經營管理를

組織·指導한다. 社長은 理事會로 부터 賦與받은 權限內에서 對外的으로 合營企業을 代表하고 對內的으로 部下職員을 任免하며 理事會에서 賦與받은 其他의 職分을 行使한다.

第40條 ① 社長·副社長은 合營企業의 理事會가 招請하여 中國公民이 擔當할 수도, 外國公民이 擔當할 수도 있다.

② 理事會의 招請이 있을 경우 理事長·副理事長·理事는 合營企業의 社長·副社長 其他의 高級管理職을 兼任할 수 있다.

③ 社長은 重要問題를 處理할때 副社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社長 또는 副社長은 他 經濟組織의 社長 또는 副社長을 兼任하여서는 아니되며 他 經濟組織의 自企業과의 商業競爭에 參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1條 社長·副社長 其他의 高級管理者에게 不正行爲 또는 重大한 職務怠慢行爲가 있었던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隨時로 解任할 수 있다.

第42條 合營企業이 外國 및 「홍콩」, 「마카오」에 支社(販賣機構물 包含한다)를 設立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對外經濟貿易部の 認可를 받아야한다.

第6章 技術導入

第43條 本章에서 技術導入이라 함은 合營企業이 技術移轉의 方式에 依하여 第三者 또는 合營者로부터 必要한 技術을 取得하는 것을 말한다.

第44條 合營企業이 導入하는 技術은 實用的, 先進的인 것으로서 그 製品이 國內에서 顯著한 社會的 經濟效果를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國際競爭力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第45條 技術移轉協定을 締結할 때에는 반드시 合營企業이 獨立하여 經營管理를 行할 權利를 保護하고 또한 本條例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讓渡側에 關係資料의 提供을 要求하여야 한다.

第46條 ① 合營企業이 締結한 技術移轉協定은 企業主管部署의 審査·同

의를 얻고 또한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技術移轉協定은 다음의 規定에 合致되어야 한다.

1. 技術使用料는 公平하고 正當하여야 하며 一般의 方式으로 割引方式으로 支拂할 것. 割引方式에 의하여 技術使用料를 支拂할 때 割引率은 通常의 國際的 水準을 上廻하여서는 아니된다. 割引率은 當該 技術에 依하여 生産된 製品의 純賣上高에 따라 또는 雙方이 協定한 其他의 合理的인 方式에 의하여 計算한다.
2. 別途로 雙方의 協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技術讓渡側은 技術引受側에 製品의 輸出地域·數量·價格을 制限하여서는 아니된다.
3. 技術移轉協定の 期間은 一般의 方式으로 10年을 超過하지 아니한다.
4. 技術引受側은 技術移轉協定の 期間滿了後에도 계속 當該 技術을 使用할 權利를 가진다.
5. 技術移轉協定을 締結한 雙方에 依한, 改善技術의 相互交換條件은 對等하여야 한다.
6. 技術引受側은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調達先으로부터 必要한 機械設備·部品·附屬品 및 原材料를 購入할 權利를 가진다.
7. 中國의 法律·法規로 禁止된 不當한 制限條項을 包含시켜서는 아니된다.

第7章 土地使用權과 그 費用

第47條 合營企業은 土地使用에 있어서 節約의 原則을 貫徹하여야 한다. 必要한 土地는 合營企業이 所在地의 市(縣)級 土地管理部署에 申請하고 審査·許可를 받은 後 契約을 締結하여 土地使用權을 取得한다. 契約에는 土地의 面積·場所·用途, 契約期間, 土地使用權의 費用(以下 “土地使用料”라 略稱한다), 雙方의 權利와 義務, 契約違反의 罰則 等을 明記하여야 한다.

第48條 合營企業이 必要로 하는 土地의 使用權을 이미 中國側 合營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中國側 合營者는 이를 合營企業에 出資할 수 있다. 그 評價額은 同種의 土地使用權을 取得하는데 支拂되는 使用料와 同一하여야 한다.

第49條 土地使用料基準은 當該 土地의 用途, 地理·環境條件, 土地收用·退去費用 및 基礎施設에 대한 合營企業의 要求 등의 要素에 根據하여 所在地의 省·自治區·直轄市 人民政府가 定하고 또한 對外經濟貿易部와 國家의 土地主管部署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린다.

第50條 ① 農業·牧畜業에 従事하는 合營企業은 所在地의 省·自治區·直轄市 人民政府의 同意를 얻어 合營企業의 營業收入의 百分率에 의하여 土地使用料를 所在地의 土地主管部署에 納付할 수 있다.

② 經濟未發達地域에서 開發事業에 従事하는 때에는 所在地 人民政府의 同意를 얻을 경우 土地使用料에 대하여 特別히 優待할 수 있다.

第51條 ① 土地使用料는 使用을 開始하고부터 5年間은 調整하지 아니한다. 그 後 經濟의 發展, 需給狀況의 變化 및 地理·環境條件의 變化에 따라 調整이 必要한 때에도 調整의 間隔은 3年보다 짧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土地使用料를 中國側 合營者의 投資로 할 경우에는 當該 契約期間內에는 調整할 수 없다.

第52條 合營企業이 本條例 第47條에 의하여 土地使用權을 取得한 때 그 土地使用料는 契約에 定한 使用期間이 開始된 때부터 年度別로 納付하는 것으로 하며 第1曆年의 使用期間이 半年을 超過한 경우에는 半年으로 計算하고 半年 未滿인 경우에는 免除한다. 契約期間內에 土地使用料가 調整된 경우에는 調整된 年度부터 새로운 費用基準으로 納付하여야 한다.

第53條 合營企業은 使用이 許可된 土地의 使用權만 가지며 所有權은 가지지 아니한다. 그 使用權은 讓渡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章 計劃·購買 및 販賣

第54條 合營企業의 基本建設計劃(施工陳, 各種 建築材料, 물, 電氣, 「가스」等을 包含한다)은 承認된 企業化調查報告에 依據하여 作成하고 또한 企業主管部署의 基本建設計劃에 包含시키는 것으로 하여 企業主管部署는 이를 優先시켜 그 實施를 保證하여야 한다.

第55條 合營企業의 基本建設資金은 合營企業의 口座開設銀行이 統一的으로 管理한다.

第56條 ① 合營企業이 合營契約에 定하는 經營範圍와 生産規模에 따라 策定한 生産經營計劃은 理事會에서 承認되고 부터 執行하며 또한 企業主管部署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린다.

② 企業主管部署 및 各級의 計劃管理部署는 合營企業에 대하여 指令의 生産經營計劃을 下達하지 아니한다.

第57條 合營企業은 必要한 機械設備·原材料·燃料·附屬品·輸送手段 및 事務用品 等(以下“物資”라 略稱한다)을 中國에서 購入할 것인가를 獨自的으로 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다만, 同等한 條件下에서는 可能한 限 優先的으로 中國에서 購入하여야 한다.

第58條 合營企業이 中國에서 購入하는 物資의 供給經路는 다음과 같다.

1. 計劃分配에 屬하는 物資는 企業主管部署의 供給計劃에 包含시키며 物資·商業部署 또는 生産企業이 契約에 따라 供給을 保證한다.
2. 物資 商業部署가 取扱하는 物資는 關係있는 物資取扱單位로부터 購入한다.
3. 市場의 自由流通에 屬하는 物資는 生産企業 또는 仲介販賣·代理販賣機構로부터 購入한다.
4. 對外貿易公司가 取扱하는 輸出物資는 關係있는 對外貿易公司로부터 購入한다.

第59條 合營企業이 中國에서 購入하는 必要한 事務·生活用品은 制限을

받지 아니하고 必要量에 따라 購入할 수 있다.

第60條 中國政府는 合營企業이 製品을 國際市場에서 販賣하는 것을 獎勵한다.

第61條 合營企業이 生産하는 製品이 中國에서 緊急히 必要하거나 또는 輸入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인 경우에는 國內市場에서의 販賣를 主로 할 수 있다.

第62條 合營企業은 그 製品을 獨自的으로 輸出할 權限을 가진다. 또한 外國側 合營者의 販賣機構 또는 中國의 對外貿易公司에 代理販賣 또는 仲介販賣를 委託할 수도 있다.

第63條 ① 合營企業이 合營契約에 定하는 經營範圍內에서 當該 企業의 生産에 必要한 機械設備·部品·附屬品·原材料·燃料을 輸出할 때, 國家가 輸入許可證의 受領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每年 1回 計劃을 作成하고 半年에 1回 許可를 申請한다. 外國側 合營者가 現物出資로하는 機械設備 其他의 物資는 認可機關의 認可書類에 依據하여 直接 輸入許可證을 取得하여 輸入할 수 있다. 合營契約에 定하는 範圍를 超越하여 輸入하는 物資로서 國家가 輸入許可證의 受領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은 別途로 許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 合營企業이 生産한 製品은 獨自的으로 輸出할 수 있지만 國家가 輸出許可證의 受領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當該 企業의 年度 輸出計劃에 따라 半年에 1回 許可를 申請한다.

第64條 合營企業이 中國에서 製品을 販賣할 때에는 다음의 方法에 依한다

1. 計劃分配에 屬하는 物資는 企業主管部署를 통하여 物資管理部署의 分配計劃에 包含시키고 計劃에 따라 指定된 需要家에게 販賣한다.
2. 物資·商業部署가 取扱하는 物資는 物資·商業部署가 合營企業에 發注한다.
3. 上記 2種의 物資의 計劃收買外의 部分 및 上記 2種에 屬하지 아니하는 物資에 대하여 合營企業은 獨自的으로 販賣하거나 關係單位

에 代理販賣를 委託할 權限을 가진다.

4. 合營企業이 輸出하는 製品이 中國의 對外貿易公司에서 輸入하여야 하는 物資인 경우 合營企業은 中國의 對外貿易公司에 販賣하고 外貨를 受取할 수 있다.

第65條 合營企業이 國內에서 購入하는 物資 및 必要로 하는 「서어비스」의 價格은 다음의 規定에 依한다.

1. 輸出製品의 生産에 直接 使用하는 金·銀·白金·石油·石炭·木材 等 6種의 原料는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對外貿易部署가 發表하는 國際市場價格으로 計算하고 外貨 또는 人民幣으로 支拂한다.
2. 中國의 對外貿易公司가 取扱하는 輸出商品 또는 輸入商品을 購入할 때에는 供給者, 需要者 雙方이 國際市場價格을 參考하고 協議하여 價格을 決定하여 外貨로 支拂한다.
3. 中國 國內에서 販賣되는 製品을 生産하는데 必要한 燃料用炭·車輛用油, 本條 1, 2 號에 記載한 以外の 物資를 購入할 때의 價格 및 合營企業에 물·電氣·「가스」·熱·貨物輸送·勞務·工事設計·相談「서어비스」·廣告 等を 提供할 때의 費用은 國營企業과 同等하게 待遇하여 人民幣으로 支拂하는 것으로 한다.

第66條 ① 合營企業이 中國 國內에서 販賣하는 製品에 대하여는 物價管理部署의 許可를 얻어 國際市場價格을 參照하여 價格을 決定할 수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國家가 定한 價格에 依據하여 品質에 따라 價格을 決定하며 人民幣으로 受取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이 決定한 製品販賣價格은 企業主管部署와 物價管理部署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려야 한다.

② 合營企業의 輸出製品價格은 合營企業이 獨自의으로 決定하고 企業主管部署와 物價管理部署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린다.

第9章 稅 務

第67條 合營企業은 中華人民共和國의 關係法律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各

種의 稅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68條 合營企業의 從業員은 『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에 따라 個人所得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69條 ① 合營企業이 다음의 物資를 輸入할 때에는 關稅와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1. 契約의 規定에 따라 外國側 合營者의 現物出資로 한 機械設備·部品·附屬品 其他의 物料(其他의 物料라 함은 合營企業의 工場(作業場) 建設 및 機械의 設置·固定에 必要한 材料를 말한다. 以下 同一하다.)
2. 合營企業이 投資總額內의 資金으로 輸入한 機械設備·部品·附屬品 其他의 物料
3. 認可機關의 許可를 받아 合營企業이 增資하여 輸入한 國內에서 生産供給을 保證할 수 없는 機械設備·部品·附屬品 其他의 物料
4. 合營企業이 輸出製品의 生産을 위하여 外國으로부터 輸入한 原材料·補助材料·素子·部品·包裝材料

② 上記한 免稅輸入物資가 許可를 얻어 中國 國內에서 轉賣되거나 中國 國內에서 販賣하는 製品으로 轉用된 때에는 規定대로 稅金을 納付 또는 追加하여야 한다.

第70條 ① 合營企業이 生産하는 輸出製品은 國家가 輸出을 制限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中華人民共和國 財政部의 許可를 얻어 工商統一稅를 免除할 수 있다.

② 合營企業이 生産하는 國內販賣製品에 대하여는 開業 初期에 納稅가 困難한 경우 工商統一稅의 一定期間의 減免을 申請할 수 있다.

第10章 外換管理

第71條 合營企業의 外換에 관한 모든 事項은 『中華人民共和國 外換管理暫定條例』와 關係管理規則의 規定에 따라 處理한다.

第72條 ① 合營企業은 中華人民共和國 國家工商行政管理局이 發給한 營業許可證을 基礎로 하여 中國銀行 또는 其他의 指定銀行에 外貨預金口座와 人民幣預金口座를 開設하며, 口座開設銀行이 受取·支拂을 監督한다.

② 合營企業의 모든 外貨收入은 口座開設銀行의 外貨預金口座에 預入시키며 모든 外貨支出은 그 外貨預金口座로부터 支拂되어야 한다. 預金金利는 中國銀行이 發表한 利率에 의한다.

第73條 合營企業의 外貨收支는 通常 收支의 均衡을 保持하여야 한다. 認可된 合營企業의 企業化調查報告, 契約에 依하여 製品の 國內販賣를 主로 하기 위하여 外貨의 均衡을 期할 수 없는 경우에는 關係 省·市·自治區 人民政府 또는 國務院 主管部署가 留保外貨中에서 調整·解決하며, 解決할 수 없는 경우에는 對外經濟貿易部가 中華人民共和國 國家計劃委員會와 合同으로 審査한 後 計劃에 包含시켜 解決한다.

第74條 合營企業이 外國 또는 「홍콩」·「마카오」의 銀行에 外貨預金口座를 開設할 때에는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同 分局의 許可를 얻고 또는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同 分局에 受取·支拂狀況을 報告하며 銀行殘高票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75條 合營企業이 外國 또는 「홍콩」·「마카오」에 設立한 支社는 現地에 中國銀行이 있는 경우 中國銀行에 口座를 開設하여야 한다. 그 年度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는 合營企業을 通하여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同分局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76條 合營企業은 經營業務의 必要에 따라 『中國銀行의 中外合資經營企業에 대한 貸付暫定規則』에 따라 中國銀行에 外貨貸付, 人民幣貸付를 申請할 수 있다. 合營企業에 대한 貸出金利는 中國銀行이 發表한 利率에 의한다. 合營企業은 外國 또는 「홍콩」·「마카오」의 銀行으로부터 外貨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다만, 國家外換管理局 또는 同分局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려야 한다.

第77條 合營企業의 外國籍 및 「홍콩」·「마카오」從業員의 賃金 其他의 正

當한 收益은 法律에 의거하여 納稅한 後, 中國 國內에서 使用하는 經費를 控除한 殘餘部分을 中國銀行에 申請하여 全額 送金할 수 있다.

第11章 財務와 會計

第78條 合營企業의 財務, 會計制度는 中國의 關係法律, 財務, 會計制度의 規定에 의거하고 合營企業의 事情을 고려하여 定하고 또한 現地 財政部署 稅務機關에 報告하여 公簿에 올려야 한다.

第79條 合營企業은 總會計士를 두어 社長을 도와 企業의 財務·會計를 責任지고 主宰케 한다. 必要한 때에는 副總會計士를 둘 수도 있다.

第80條 合營企業은 會計檢査士를 두어(小企業은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合營企業의 財務收支와 會計計定을 審査·檢査케 하여 理事會와 社長에게 報告케 한다.

第81條 合營企業의 會計年度는 曆年制를 採用하고 陽曆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를 1會計年度로 한다.

第82條 合營企業의 會計에서는 國際적으로 通用되고 있는 發生主義와 貸借記帳法을 採用하여 記帳한다. 私製의 證憑·帳簿·報告書는 모두 中國語로 記入하여야 한다. 同時에 各當事者가 約定한 1個의 外國語로 記入할 수도 있다.

第83條 合營企業은 原則적으로 人民元을 記帳의 本位貨幣로 하나 各當事者가 約定하고 있는 1個의 外國通貨를 本位貨幣로 할 수도 있다.

第84條 ① 合營企業의 計定은 記帳本位貨幣에 의하여 記錄하는 外에 現金, 銀行預金 其他의 貨幣費目 및 債權, 債務, 收益, 費用 등이 記帳本位貨幣와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히 收納·支拂通貨에 의하여 記帳하여야 한다.

② 外國通貨로 記帳하는 合營企業은 外國通貨에 의한 會計報告書를 作成하는 外에 別途로 人民元으로 換算한 會計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③ 換率의 差異에 의하여 發生한 換損益은 實數를 基準으로하여 當期 損

益으로서 帳簿에 記載하여야 한다. 記帳換率이 變하는 경우 外貨關係 計定の 帳簿殘高는 모두 調整하지 아니한다.

第85條 合營企業이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所得稅法』에 따라 所得稅를 納付한 後 利益分配의 原則은 다음과 같다.

1. 豫備基金, 從業員獎勵, 福祉基金, 企業發展基金을 控除한다. 控除比率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2. 豫備基金은 合營企業의 缺損의 補填에 使用하는 外에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 當該 企業의 增資·生産擴大에 使用할 수도 있다.
3. 本條 第1號의 規定에 따라 3個의 基金을 控除한 後의 分配利益은 理事會가 分配를 確定한 경우 各 當事者의 出資比率에 따라 分配하여야 한다.

第86條 前年度의 缺損이 補填되지 아니한 때에는 利益을 分配하여서는 아니된다. 前年度에 分配되지 아니한 利益은 當該年度의 利益에 包含시켜 分配할 수 있다.

第87條 ① 合營企業은 各 當事者, 現地稅務機關, 企業主管部署 및 同級의 財政部署에 4分期 및 年度會計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年度會計報告書는 그 寫本을 原認可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88條 合營企業의 다음의 書類·證明書·報告書는 中國에 登錄된 會計士의 檢證을 받고 證明을 取得하여야만 有効하다.

1. 各 當事者의 出資證明書(物料·土地所有權·工業所有權·技術「노하우」로 出資하는 경우에는 各 當事者가 署名·同意한 財産評價明細書 및 그 協定書類를 包含하여야 한다)
2. 合營企業의 年度會計報告書
3. 合營企業의 清算會計報告書

第12章 從業員

第89條 合營企業從業員의 募集·招請·辭任·辭職·賃金·福祉·勞動保

險·勞動保護·勞動法規 等の 事項은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 勞動管理規定』에 의거하여 處理한다.

第90條 合營企業은 從業員이 生産·管理技能面에서 現代的 企業의 要請에 副應할 수 있도록 業務·技術訓練을 強化하고 엄격한 考課制度를 確立하여야 한다.

第91條 合營企業의 賃金·獎勵制度는 勞動에 따라 分配하고 많이 일하면 報酬도 많다는 原則에 合致되게 하여야 한다.

第92條 正·副社長, 正·副技師長, 正·副總會計士, 會計檢查士 等の 高級管理者의 賃金·待遇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第13章 勞 組

第93條 合營企業의 從業員은 『中華人民共和國勞組(譯註: 原語는 工會)法』 以下 “中國勞組法”이라 略稱한다) 및 『中國勞組規約』의 規定에 의하여 末端勞組組織을 設立하여 勞組活動을 할 權利를 가진다.

第94條 合營企業의 勞組는 從業員의 利益을 代表하며, 從業員을 代表하여 合營企業과 勞組契約을 締結하고 또한 契約의 執行을 監視할 權限을 가진다.

第95條 合營企業의 勞組의 基本的 任務는 法律에 의하여 從業員의 民主的 權利와 物質的 利益을 擁護하는 것, 合營企業에 協助하여 福祉·獎勵 基金을 決定하고 合理的으로 使用하는 것, 從業員의 政治·業務·科學·技術·業務知識의 學習을 組織하고 文藝「스포츠」活動을 展開하는 것, 勞動規律을 遵守하고 企業의 經濟諸任務의 達成에 努力하도록 從業員을 教育하는 것이다.

第96條 ① 合營企業의 理事會가 合營企業의 發展計劃·生産經營活動 等の 重大事項을 討議할 때 勞組의 代表는 會議에 列席하고 從業員의 意見과 要求를 反映시킬 權限을 가진다.

② 理事會가 從業員에게 關係있는 賞罰, 賃金制度, 生活福祉, 勞動保護

保險 등의 問題를 檢討, 決定할 때 勞組의 代表는 會議에 列席할 權限을 가지며, 理事會는 勞組의 意見을 聽取하고 勞組의 協力을 求하여야 한다.

第97條 合營企業은 自企業 勞組의 活動을 積極 支持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은 『中國勞組法』의 規定에 따라 勞組組織에 必要한 建物과 設備을 提供하여 事務, 會議, 從業員의 集團福祉, 文化, 體育事業에 使用케 하는 것으로 한다. 合營企業은 每月 從業員의 實質賃金總額의 2%를 勞組經費로 하고 企業勞組는 이를 中華全國總工會가 制定한 勞組經費管理規則에 따라 使用한다.

第14章 期間·解散 및 清算

第98條 合營企業의 合營期間은 各各의 業種과 事業의 具體的 狀況에 따라 各 當事者가 協議하여 決定한다. 一般事業의 合營期間은 原則적으로 10年 내지 30年으로 한다. 投資가 크고 工期가 길며 資本利率이 낮은 事業은 合營期間을 30年 以上으로 할 수도 있다.

第99條 ① 合營企業의 合營期間은 各 當事者가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 中에 規定한다. 合營期間은 合營企業의 營業許可證 交付日로부터 起算한다.

② 各 當事者가 合營期間의 延長에 同意한 경우에는 合營期間 滿了의 6個月前에 各 當事者의 授權代表가 署名한 合營期間 延長의 申請書를 認可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 認可機關은 申請書를 受取한 날로부터 1個月內에 回答을 하여야 한다.

③ 合營企業은 合營期間 延長을 認可받은 後 『中華人民共和國合資經營企業登記管理規則』의 規定에 따라 變更登記手續을 取하여야 한다.

第100條 ① 合營企業은 다음의 경우에 解散한다.

1. 合營期間이 滿了한 경우
2. 企業에 重大한 缺損이 發生하여 經營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合營의 一方이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定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함으로써 企業이 經營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自然災害·戰爭 等の 不可抗力에 의하여 重大한 損害가 發生하여 經營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合營企業이 그 經營目的을 達成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將來의 展望이 없는 경우
 6. 合營企業의 契約·定款에 規定된 其他 解散의 原因이 發生한 경우
- ② 上記 2, 3, 4, 5, 6 號의 事態가 發生한 때에는 理事會가 解散申請書를 提出하고 認可機關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③ 本條 第 1 項 3 號의 경우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定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一方의 當事者는 이에 의한 合營企業의 損害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負擔하여야 한다.

第101條 合營企業이 解散을 宣言하는 때에는 理事會는 清算의 手續, 原則 및 清算委員會의 人選을 提出하고 企業主管部署의 認可 및 清算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第102條 ① 清算委員會의 構成員은 一般的으로 合營企業의 理事中에서 選任하는 것으로 한다. 理事가 清算委員會의 構成員을 擔任할 수 없거나 또는 擔任에 適合하지 아니할 때 合營企業은 中國에 登錄된 會計士·辯護士를 招請할 수 있다. 認可機關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사람을 派遣하여 監督케 할 수 있다.

② 清算費用 및 清算委員會 構成員의 勞動報酬는 合營企業의 現財産中에서 優先的으로 支給하는 것으로 한다.

第103條 ① 清算委員會의 任務는 合營企業의 財産·債權·債務에 대하여 全面的으로 調査하고 貸借對照表 및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財産評價와 計算의 根據로 提出하여 清算案을 定하고 理事會에서 採擇된 後 執行하는 것이다.

② 清算期間中 清算委員會는 當該 合營企業을 代表하여 提訴·應訴를

擔當한다.

第104條 ① 合營企業은 그 全財産을 債務에 負擔한다. 合營企業이 債務를 辨濟한 後의 剩餘財産은 各 當事者의 出資比率에 따라 分配한다. 다만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경우는 除外한다.

② 合營企業이 解散할 때 그 資產殘高 또는 剩餘財産中 資本金을 超過하는 部分은 利益으로 보지 아니하며 法律에 依하여 所得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外國側 合營者가 分配된 資產殘高 또는 剩餘財産中에서 出資額을 超過하는 部分을 外國에 送金할 때에는 法律에 依하여 所得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05條 合營企業의 清算이 終了된 後 清算委員會는 清算終了報告를 提出하고 理事會에서 採擇된 後 原認可機關에 報告하며 또한 原登記管理機關에서 登記抹消手續을 行하고 營業許可證을 返還한다.

第106條 合營企業의 解散後 諸帳簿 및 書類는 中國側 合營者가 保存하는 것으로 한다.

第15章 紛爭의 解決

第107條 合營 各 當事者가 合營企業의 協定·契約·定款을 解釋 또는 履行하는 때 紛爭이 發生한 경우에는 可能한 限 友好的 協議 또는 調停을 통하여 解決하여야 한다. 協議 또는 調停이 效力이 없는 경우에는 仲裁 또는 司法에 依한 解決을 求한다.

第108條 各 當事者는 仲裁에 關한 書面協定에 依거하여 仲裁를 求한다.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對外經濟貿易仲裁委員會에서 仲裁하고 同 會의 仲裁手續·規則에 따를 수 있다. 各 當事者가 同意한 경우에는 申請을 받은 側의 所在國 또는 第3國의 仲裁機關에서 仲裁하고 當該 機關의 仲裁手續·規則에 따를 수 있다.

第109條 各 當事者間에 仲裁의 書面協定이 없는 경우 紛爭을 일으킨 어느 一方도 法律에 依하여 中國人民銀行에 訴를 提起來할 수 있다.

第110條 紛爭解決期間中 紛爭事項을 除外하고는 各 當事者는 계속 合營 企業의 協定·契約·定款에 定한 其他의 諸條項을 履行하여야 한다.

第16章 附 則

第111條 合營企業의 外國籍從業員 및 「홍콩」·「마카오」의 從業員(그의 家族을 包含한다)이 經常的으로 中國에 出入國할 必要가 있는 경우 中國의 「비자」主管機關은 手續을 簡略化하여 편의를 提供할 수 있다.

第112條 合營企業의 中國人從業員이 業務上의 必要에 의하여 視察·商談·學習 또는 研修를 위하여 出國할 경우에는 企業主管部署가 出國을 申請하고 出國手續을 取한다.

第113條 合營企業의 外國籍從業員 및 「홍콩」·「마카오」의 從業員은 必要한 交通手段 및 事務用品을 搬入할 수 있으나 規定에 따라 關稅 및 工商統一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14條 經濟特區에 設立된 合營企業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또는 國務院이 採擇·承認한 法律, 法規에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第115條 本 條例의 解釋權은 對外經濟貿易部에 屬한다.

第116條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實施한다.

3. 廣東省經濟特區條例

(1980年 8月 21日,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第15次 會議에서 承認)

(出處: 經濟導報 1980年 第35期)

第1章 總 則

第1條 對外經濟協력과 技術交流를 발전시키고 社會主義現代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廣東省의 深圳·珠海·汕頭 3個市에 各各 一定한 區域을 指

定하여 經濟特區(以下“特區”라 略稱한다)를 設置한다. 特區는 外國公民, 華僑, 「홍콩」·「마카오」 同胞 및 그의 會社, 企業(以下“投資家”라 略稱한다)이 投資하여 工場을 設置하거나 또는 中國側과 合資하여 工場을 設置하며, 企業 其他 事業體를 經營하는 것을 獎勵함과 同時에 法律에 의하여 그의 資產·取得利潤 其他 合法的인 權利와 利益을 保護한다.

第2條 特區內의 企業과 個人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法律·法令 및 關係 諸 規定을 遵守하여야 한다. 本 條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은 本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한다.

第3條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를 設立하고 廣東省人民政府에 代身하여 各 特區에 대하여 統一의 管理를 實行하게 한다.

第4條 特區는 投資家を 위하여 廣範한 經營範圍를 提供하고 良好한 經營條件을 創出하며 安定된 經營場所를 保證한다. 國際經濟協力和 技術交流에 積極的인 意義를 가진 工業, 農業, 牧畜業, 養殖業, 觀光業, 住宅·建築業, 高級技術研究製造業, 其他 投資家와 中國側이 共히 興味를 가지는 업종에 대하여는 반드시 投資, 經營하여야 하며 또는 中國側과 合資經營할 수 있다.

第5條 特區의 整地와 給水·排水·電力供給·道路·埠頭·通信·倉庫 등의 公共施設은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가 責任지고 建設하며 必要한 때에는 外國資本을 導入하여 建設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第6條 各 特區는 各各 國內外的 專門家와 中國의 現代化建設에 熱誠的인 關係者를 招請하여 顧問委員會를 組織하고 當該 特區의 諮問機構로 한다.

第2章 登錄과 經營

第7條 投資家が 特區에 投資하여 工場을 設置하고 各種 經濟事業을 經營할 때에는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에 申請을 하여 審査·承認을 받은 後 登錄證書와 土地使用證書를 發給 받는다.

第8條 ① 投資家は 特區內에 設立된 中國銀行 또는 中國側의 承認을 얻어 設立된 銀行에 口座를 開設하여 關係 外換事務를 處理할 수 있다.

② 投資家の 各種 保險은 特區 內에 設立된 中國人民保險公司 또는 其他 中國側의 承認을 얻어 設立된 保險會社에 加入할 수 있다.

第9條 特區企業의 製品을 國際市場에의 販賣에 提供하거나 中國의 內地에 販賣할 때에는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의 審査·承認을 받아야 하며 또한 稅關에 納稅手續을 取하여야 한다.

第10條 投資家は 特區內에서 自己의 企業을 設立하여 經營하고 外國籍人員을 雇用하여 技術 및 管理의 業務를 擔當케 할 수 있다.

第11條 投資家が 特區內에서 經營하는 企業이 途中에 營業을 停止할 때에는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에 그 理由를 申告하고 營業停止의 手續을 行하며 債權·債務를 清算하여야 한다. 營業을 停止한 後, 그 資產은 轉賣할 수 있으며 資產은 換送金할 수 있다.

第3章 優待方法

第12條 特區의 土地는 中華人民共和國의 所有이다. 投資家が 土地를 使用할 때에는 實際의 必要에 따라 提供하고 그 使用期限·土地使用料 및 納入方法은 業種과 用途의 差異에 따라 優待한다. 具體的인 方法은 別途로 定한다.

第13條 特區企業이 輸入하는 生産에 必要한 機械設備·部品·附屬品·原材料·輸送手段 其他 生産手段에 대하여는 輸入稅를 免除한다. 必需 生活用品에 대하여는 具體的인 狀況에 따라 差等課稅하거나 輸入稅를 減免한다. 上記한 物品을 輸入하거나 特區의 製品을 輸出할 때에는 반드시 稅關에 申告手續을 行하여야 한다.

第14條 特區企業의 所得稅 稅率은 15%로 한다. 本 條例의 公布後 2年 以內에 投資·經營하는 企業 또는 投資額이 500萬달라 以上인 企業 또는 技術水準이 比較的 높고 資金의 回轉이 比較的 長期인 企業에 대하

여는 特惠를 賦與한다.

第15條 投資家が 企業所得稅를 納付한 後 取得한 合法的인 利潤, 特區內 企業의 外國籍從業員, 華僑從業員, 「홍콩」·「마카오」從業員의 個人所得稅 納入後의 貨金 其他 正當한 所得은 特區外換管理法의 規定에 따라 特區內의 中國銀行 또는 其他 銀行을 通하여 送金할 수 있다.

第16條 投資家로서 取得한 利潤을 特區內에 再投資하고 그 期間이 5年 以上이 된 者는 再投資에 使用한 部分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을 申請할 수 있다.

第17條 特區企業이 中國에서 生産한 機械設備·原材料 其他 物資를 使用하는 것을 獎勵하기 위하여 그 價格은 中國의 同種商品, 同一時期의 輸出價格으로 優待할 수 있으며 이는 外貨로 清算한다. 이들 製品과 物資는 販賣單位의 販賣證明書を 根據로 하여 直接 特區에 運送할 수 있다.

第18條 特區에 出入하는 外國人, 華僑, 「홍콩」·「마카오」同胞의 出入國 節次는 모두 簡略化하여 便宜를 提供한다.

第4章 勞動管理

第19條 各 特區에 勞動服務公司를 設立한다. 特區企業이 雇用하는 中國人 從業員은 現地 勞動服務公司가 紹介하거나,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投資家が 獨自의으로 募集하거나, 모두 企業이 試驗을 實施하여 採用하고 從業員과 勞動協約을 締結한다.

第20條 ① 特區企業이 採用하는 從業員은 當該 企業이 그 經營의 要求에 따라 管理하고 必要한 때에는 解雇할 수 있다. 그 節次는 勞動協約의 規定에 의한다.

② 特區企業의 從業員은 勞動協約의 規定에 의하여 企業에 대하여 辭職을 申請할 수 있다.

第21條 特區企業에서 일하는 中國人 從業員의 貨金水準·貨金形態·報獎方法 및 勞動保險, 從業員에 대한 國家의 諸手當은 廣東省經濟特區管理

委員會의 規定에 의하여 企業이 從業員과 契約를 締結하여 定한다.

第22條 特區企業은 必要한 勞動保護措置를 講求하여 安全하고 衛生的인 條件下에서 從業員이 일하도록 保障하여야 한다.

第5章 組織과 管理

第23條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는 다음의 職權을 行使한다.

1. 特區의 開發計劃을 策定하고 또한 그 實施를 按配한다.
2. 特區에 있어서의 投資家의 投資項目을 審査·承認한다.
3. 特區의 工·商業登記와 土地의 審査·割當을 取扱한다.
4. 特區內에 設立되는 銀行·保險·稅務·稅關·國境檢問·郵便電信等 機關의 業務關係를 調整한다.
5. 特區企業이 必要로 하는 從業員을 提供하고 또한 從業員의 正當한 權利·利益을 保護한다.
6. 特區의 教育·文化·衛生 및 各種 公益事業을 行한다.
7. 特區의 治安을 維持하고 法律에 의하여 特區內의 人身 및 財產이 侵害되지 아니하도록 保護한다.

第24條 深圳特區는 廣東省經濟特區管理委員會가 直接管理·經營하고 珠海·汕頭의 兩 特區에는 必要한 事務處理機關을 設立한다.

第25條 特區의 經濟活動의 進展에 適應시키기 위하여 廣東省經濟特區開發公司를 設立한다. 同 公司의 業務範圍는 資金準備 및 信託投資業務를 引受하는 것, 特區內 關聯企業을 經營하거나 投資家와 合資, 經營하는 것, 特區의 投資家が 內地와 貿易去來하는 購買·販賣事務를 代行하는 것, 商談「서어비스」를 提供하는 것이다.

第6章 附 則

第26條 本 條例는 廣東省人民代表大會에서 可決되고 中華人民共和國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報告하여 承認받은 後에 施行한다.

4. 經濟特區 및 沿海 14 個 港灣都市의 企業所得稅·工商統 一稅의 減免에 關한 暫定規定

(1984年 11月 15日, 國務院 公布)

(出處: 經濟導報 1984年 第47期)

深圳·珠海·廈門·汕頭的 4 個 經濟特區 및 大連·秦皇島·天津·煙台·青島·連雲港·南通·上海·寧波·溫州·福州·廣州·湛江·北海의 沿海 14 個 港灣都市에 있어서 對外經濟協力과 技術交流의 擴大, 外資와 先進技術의 導入, 社會主義現代化의 加速에 有利하게 하기 위하여 上記의 特區都市에 投資하여 中國과의 合資經營·共同經營 또는 全額出資企業을 設立하는 外國 및 「홍콩」·「마카오」의 會社·企業 및 個人(以下 “投資家”라 稱한다)에 대하여 企業所得稅 및 工商統一稅 減免의 優待措置를 取한다.

一. 經濟特區

1. 經濟特區(以下 “特區”라 略稱한다)에 設立된 合資經營·共同經營 및 全額出資企業(以下 “特區企業”이라 統稱한다)의 生産·經營에 의한 所得 其他의 所得에 대하여는 15%의 稅率로 企業所得稅를 徵收한다. 그 中,

(1) 工業·交通運送業·農業·林業·牧畜業 等の 生産的 業種에 從事하고 經營期間이 10 年 以下인 것에 대하여는 企業이 申請하고 特區의 稅務機關이 許可한 경우 利益을 얻기 始作한 年度부터 起算하여 第 1 次, 第 2 次年度에는 所得稅를 免除하고 第 3 次年度부터 第 5 次年度까지는 所得稅를 半減한다.

(2) 「서어비스」的 業種에 從事하고 投資家の 出資가 500 萬달라를 超過하며 經營期間이 10 年 以上인 것에 대하여는 企業이 申請하고 特區의 稅務機關이 許可한 경우, 利益을 얻기 始作한 年度부터 起算하여 第 1 次年度에는 所得稅를 免除하고 第 2 次, 第 3 次年度에는

所得稅를 半減한다.

2. 特區企業에 課稅하는 地方所得稅에 대하여 減免의 優待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特區人民政府가 決定한다.

3. 特區 合資經營企業의 投資家가 企業으로부터 取得한 利益을 國外에 送金할 때에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4. 中國 國內에 事務所를 設置하고 있지 아니한 投資家가 特區를 源泉으로 하는 配當金·利子·「리스」料·特許權使用料 其他의 所得을 가지는 때에는 法律에 依하여 所得稅를 免除할 경우를 除外하고는 10%의 稅率로 所得稅를 徵收한다. 그 中 優待條件인 資金·設備을 提供하고 先進技術을 移轉하고 있어 一層의 減免優待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特區人民政府가 決定한다.

5. 特區企業이 輸入하는 貨物로서 工商統一稅를 徵收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特區管理線의 完成 以前은 生産에 必要한 機械設備, 原材料, 部品·附屬品·交通手段 其他 生産財에 대하여는 工商統一稅를 免除하고 國家가 輸入을 制限하고 있는 交通手段·耐久消費財에 대하여는 規定대로 工商統一稅를 徵收하며 各種의 鑛物油, 담배, 酒類 其他의 各種 生活用品의 輸入에 대하여는 稅法規定의 半分の 稅率로 工商統一稅를 徵收한다. 特區管理線의 完成 以後는 各種의 鑛物油, 담배, 酒類의 輸入에 대하여는 稅法規定의 半分の 稅率로 工商統一稅를 徵收하고 其他의 輸入貨物에 대하여는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投資家가 個人的으로 携帶輸入하는 私用의 담배, 酒類, 手荷物品, 家財道具는 合理的 數量的 範圍內에서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6. 特區企業이 生産하는 輸出製品은 國家의 輸出制限品目 또는 別途의 規定이 있는 少數의 製品을 除外하고는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7. 特區企業이 生産하는 製品을 當該特區에서 販賣할 경우 各種의 鑛物油, 담배, 酒類에 대하여는 稅法規定의 半分の 稅率로 工商統一稅를 徵收한다. 特區人民政府도 獨自的으로 少數의 製品을 指定하여 規定대로 또는

減額하여 工商統一稅를 徵收할 수 있다. 其他의 製品에 대하여는 모두 工商統一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8. 特區企業이 工商統一稅의 減免措置를 받은 輸入貨物 또는 特區에서 生産한 製品을 內地로 搬入할 때에는 內地에 進入하는 時點에서 稅法의 規定에 따라 工商統一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投資家 個人이 特區에서 內地로 들어 올 때 携帶하는 私用의 手荷物物品에 대하여는 合理的 數量의 範圍內에서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9. 特區企業이 商業·交通運送業·「서비스」業에 從事하여 取得한 收入에 대하여는 稅法에 定하는 稅率로 工商統一稅를 徵收하여야 한다. 銀行·保險業에 從事하여 取得한 收入에 대하여는 3%의 稅率로 工商統一稅를 徵收한다. 上記 企業의 設立初期에 期間을 定하여 工商統一稅 減免의 配慮를 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特區人民政府가 決定한다.

10. 廣東省 海南行政區內에 設立된 合資經營·共同經營·全額出資企業의 企業所得稅 및 工商統一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特區의 關係規定을 準用한다.

二. 沿海 14 個港灣都市의 經濟技術開發區

1. 經濟技術開發區(以下 “開發區”라 略稱한다)內에 設立된 合資經營·共同經營·全額出資의 生産企業(以下 “開發區企業”이라 統稱한다)의 生産·經營에 의한 所得 其他의 所得에 대하여는 企業이 申請하고 市の 稅務機關이 許可한 경우 利益을 얻기 始作한 年度부터 起算하여 第1次, 第2次 年度에는 所得稅를 免除하고 第3次年度부터 第5次年度까지는 所得稅를 半減한다.

2. 開發區企業에 課稅하는 地方所得稅에 대하여 減免의 優待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開發區所在地의 市人民政府가 決定한다.

3. 開發區 合資經營企業의 投資家가 企業으로부터 取得한 利益을 國外에 送金할 때에는 所得稅를 免除한다.

4. 中國 國內에 事務所를 設置하고 있지 아니한 投資家가 開發區를 源泉으로 하는 配當金·利子·「리스」料·特許權使用料 其他의 所得을 가진 때에는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를 免除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의 稅率로 所得稅를 徵收한다. 그 中 優待條件인 資金·設備을 提供하고 또는 先進技術을 移轉하고 있어 一層의 減免優待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開發區가 屬하는 市의 人民政府가 決定한다.

5. 開發區企業이 輸入하는 私用的 建材, 生産設備, 原材料, 部品·附屬品, 素子, 交通手段, 事務用品에 대하여는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開發區企業이 免稅 輸入하는 原材料, 部品·附屬品, 素子로 加工한 製品을 國內販賣에 轉換할 경우에는 그것에 使用된 輸入原材料 等に 대하여 規定대로 工商統一稅를 徵收한다.

6. 開發區企業이 生産하는 輸出製品은 國家의 輸出制限品目을 除外하고는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國內販賣製品에는 規定대로 課稅한다.

7. 開發區企業에 勤務하거나 開發區內에 居住하는 投資家 關係者가 携帶 輸入한 私用的 家財道具와 交通手段은 市開發區管理委員會의 證明書類를 根據로 하여 合理的 數量의 範圍內에서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三. 沿海 14 個 港灣都市의 舊市內 및 汕頭·珠海·廈門市內

1. 沿海 14 個 港灣都市의 舊市內 및 汕頭·珠海·廈門市內(以下 “舊市內”라 統稱한다)에 設立된 合資經營·共同經營·全額出資의 生産企業(以下 “舊市內企業”이라 統稱한다)으로서 技術集約·知識集約型의 事業 또는 外國投資家의 出資額이 3,000 萬달러 以上이고 投資回收期間이 긴 事業 또는 「에너지」·交通·港灣整備事業을 行하는 것에 대하여는 財政部가 許可한 경우 15%의 稅率로 企業所得稅를 徵收한다.

上記의 減稅條件을 具備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다음의 業種에 屬하는 舊市內企業에 대하여는 財政部가 許可한 경우 稅法規定의 8 割의 稅率로 企業所得稅를 徵收할 수 있다.

- (1) 機械製造·電子工業
- (2) 冶金·化學·建材工業
- (3) 輕·紡績·包裝工業
- (4) 醫療機器·製藥工業
- (5) 農業·林業·牧畜業·養殖業 및 이들 業種의 加工工業
- (6) 建築業

舊市內企業에 대한 企業所得稅의 減免은 上記의 優待稅率에 따라 『中外合資經營企業所得稅法』, 『外國企業所得稅法』에 定하는 期間과 範圍에서 行하여야 한다.

2. 舊市內企業에 課稅하는 地方所得稅에 대하여 減免의 優待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市人民政府가 決定한다.

3. 中國 國內에 事務所를 設置하고 있지 아니한 外國投資家가 舊市內를 源泉으로 하는 配當金·利子·「리스」料·特許權使用料 其他의 所得을 가지는 때에는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를 免除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0%의 稅率로 所得稅를 徵收한다. 그 中 優待條件인 資金·設備를 供給하고 또는 先進技術을 移轉하고 있어 一層의 減免優待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市人民政府가 決定한다.

4. 舊市內企業이 投資, 追加投資로서 輸入하는 當該 企業의 生産用設備, 營業用設備, 建築用材料 및 企業이 自體使用하는 交通手段과 事務用品에 대하여는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5. 舊市內企業이 生産하는 輸出製品은 國家의 輸出制限品目을 除外하고는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國內販賣製品에 대하여는 規定대로 課稅한다.

6. 舊市內企業이 輸入하는 原材料, 部品·附屬品, 素子, 包裝物料로서 輸出製品의 生産에 使用되는 部分에 대하여는 工商統一稅를 免除하며, 國內販賣製品의 生産에 使用되는 部分에 대하여는 規定대로 課稅한다.

7. 舊市內企業에 勤務하거나 舊市內에 居住하는 投資家 關係者가 携帶 輸入한 私用の 家財道具와 交通手段에 대하여는 市人民政府 主管部署의 證

明書類를 根據로 하여 合理的 數量의 範圍內에서 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四. 實施期日

本 規定의 所得稅의 減免은 1984 年度부터 實施하며 工商統一稅의 減免은 1984 年 12 月 1 日부터 實施한다.

